

특 허 법 원

제 2 2 부

판 결

사 건 2017나22 공사금지 및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2.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3. 다올이앤씨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브이에스엘코리아 주식회사)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2가합60898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31.

판 결 선 고 2018.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기재 원고 기술을 이용하여 공장 및 그 밖의 건물을 증고, 증축, 개축, 구조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 기재 원고 기술을 공개, 유출,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및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 이 유

###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② 특허권 침해행위의 금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④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① 내지 ④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③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이 법원에서 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내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③, ⑤ 청구 부분에 한정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 2. 기초사실(이 사건 공사의 경위)

가.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자동차'라 한다)는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41 의장공장을 증고, 증축, 개축, 구조 변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고, 2012. 4.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수행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문의를 받고 바로 이 사건 공사 수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고 현대자동차는 2012. 6.경 피고 다올이앤씨 주식회사(당시 브이에스엘코리아 주식회사로서 2016. 12. 26. 다올이앤씨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다올이앤씨'라 한다)에게도 이 사건 공사 수행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여 피고 다올이앤씨와도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다.

다. 이후 피고 현대자동차의 관계 회사로서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당사자인 피고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당시 현대엠코 주식회사로서 2014. 4. 8.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 현대엔지니어링'이라 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른 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 다올이앤씨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고, 피고 다올이앤씨는 2012. 8.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내지 10, 16, 24, 86 내지 8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별지] 기재 원고 기술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

당하거나 같은 조 제1호 (차)목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이 [별지] 기재 원고 기술을 원고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지를 구한다.

## 나. 판 단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제10조 제1항),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제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지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변론종결일 현재 영업비밀 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시적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가 중지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반복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예방청구로서의 금지청구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행위가 반복될 개연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금지청구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별지] 기재 원고 기술이 영업비밀 또는 성과물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그 영업비밀 내지 성과물을 사용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그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2012. 8. 31.경 완료되었는바, 그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5. 31. 현재까지 이미 약 6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상태이다.

② 나아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기술은 이 사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개량된 기술로서 향후 다른 공사에 적용되는 등으로 반복 사용될 개연성이 높아 보이지도 않는다(원고도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기술은 이미 특허출원하여 공개된 원고의 특허발 명과는 상이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 및 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개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③ 게다가 원고는 2016. 6. 15. 네이버 개인 블로그에 [별지] 기재 원고 기술 등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기술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개하였으므로(을가 제 12호증),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로서는 [별지] 기재 원고 기술이 더 이상 영업비밀로 보호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가 공개한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 현대자동차와 피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별지] 기재 원고 기술을 지득하여 피고 다올이앤씨에게 공개하였고, 피고 다올이앤씨는 [별지] 기재 원고 기술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거

나 같은 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내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5조 내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 (2) 영업비밀 해당 여부

원고는, [별지] 기재 원고 기술(9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바, 이하 항목별로 지칭할 때에는 그 분류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기술정보' 등으로 부른다)을 영업비

밀로 특정하고 있는바, 각 기술정보의 유형에 따라 아래 3개 부분으로 나누어 그 영업 비밀 해당 여부를 살펴본다.

(가) 특허 관련 기술정보(이 사건 제1 내지 5항 기술정보)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기술정보는 비공지성 요건 및 비밀관리성 요건 등을 충족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먼저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요건을 갖춘 것인지, 즉 이 사건 공사 당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2. 19. '철골건물의 증고, 증층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2004. 10. 21. 그 특허등록(특허 제454986호)을 마친 사실, 그 특허출원 명세서가 2003. 8. 25. 공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공개된 자료를 보고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

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기술정보는, 이 사건 공사현장<sup>1)</sup>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사에 적합하도록 원고의 위 특허발명을 개량한 것으로서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에도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압실린더의 상승 높이를 1,800mm로 설정하는 것(제1항), 철탑받침(가로세로 1.2m, 높이 약 5m)을 설치하고 그 상단부에 유압실린더를 설치하는 것(제2항), 기둥의 양쪽에 유압실린더의 설치하는 것(제3항), 각 기둥의 상승 높이를 편차 4mm 이내에서 상승되도록 제어하는 것(제4항), 기둥의 형태에 따라 상향 공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제5항) 등의 기술정보를 포함하므로, 원고의 위 특허발명과 동일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기술정보 중 위와 같이 개량 변경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위 특허발명에 개시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 전에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기술정보 중 위 특허발명을 개량한 것으로서 위 특허발명과의 차이점이라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들, 즉 유압실린더의 상승 높이를 1,800mm로 설정하는 것(제1항), 철탑받침(가로세로 1.2m, 높이 약 5m)을 설치하고 그 상단부에 유압실린더를 설치하는 것(제2항), 기둥의 양쪽에 유압실린더의 설치하는 것(제3항), 각 기둥의 상승 높이를 편차 4mm 이내에서 상승되도록 제어하는 것(제4항), 기둥의 형태에 따라 상향 공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제5항) 등과 같은 유압실린더의 상승 조건 및 배치 등에 관한 부분들은, 공사현장의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어지는

1) 이 사건 공사의 최종적인 기둥의 상향 높이는 1.6m이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파이프 기둥, H빔 기둥, 콘크리트 기둥 및 하단의 콘크리트 기둥과 상단의 파이프 또는 H빔 기둥으로 구성된 기둥 형태가 존재하며, 지붕에는 트러스가 기둥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되어 있다(갑 제3, 6호증).



사항들로서 동종 업계의 기술자들이 원고의 위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의해 공지된 기술을 이용한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등을 통하여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기술정보에 불과하므로, 이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기술정보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사에 적합하도록 개량한 것이라면,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기술정보는 원고가 피고 현대자동차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환경 내지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전달받기 전에는 완성되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기술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기술정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전부터 영업비밀로 관리해 온 것이라고도 할 수도 없다.

② 다음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갖춘 것인지, 즉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2, 25, 36, 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거래 내지 교섭시 상대방에게 원고의 기술정보에 대한 산업기술 보안각서를 작성 받거나 외부 유출로 인한 법적인 책임이 있음을 알리는 등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된 기술정보가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기술정보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원고의 모든 거래 내지 교섭시 위와 같은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기술정보가 원고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것으로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현대자동차의 직원이었던 권현수와 사이에 갑 제2호증의 산업기술 보안각서가 이 사건 공사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4. 29.자 피고 현대자동차의 회의록에 이 사건 제1 내지 3, 5항 기술정보가 그대로 나타나 있고, 그 배포처가 '광개기산, 시설지원팀'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회의록에는 위 기술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배포처를 명시하여 위 기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어느 정도 제한하기는 하였지만, 적어도 위 회의록의 배포처로서 원고에 대해 특별히 비밀유지의무도 없는 피고 현대자동차의 시설지원팀 직원이라면 누구나 위 기술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기술정보가 원고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것으로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현대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과의 회의에서 위 기술정보가 대외비 사항임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기술정보는, 이 사건 공사 전에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던 것으로서 비공지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그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비밀관리성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트러스 하부 파이프 찌그러짐 방지 관련 기술정보(이 사건 제6항 기술정보)

원고는 트러스 하부 파이프 찌그러짐 방지 관련 이 사건 제6항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을가 제18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6항 기술정보와 유사한 '파이프 받침대' 관련 기술이 이 사건 공사 전에 이미 다수의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으로 공지된 점, ② 파이프 받침대를 원통형의 파이프 하단의 외경에 맞추어 반원 형태의 철판으로 형성하고, 하중에 의해 파이프가 찌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판을 덧대거나 두꺼운 철판을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공사 전에 이미 동종 업계에 공연히 알려진 기술상식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트러스 하부 파이프 찌그러짐 방지 수단은 그 규격이나 재질 등에서 별다른 기술적 특수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6항 기술정보는 이 사건 공사 전에 이미 당해 업계의 종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다올이앤씨가 2012. 5. 15. 작성한 설계도면에도 트러스 파이프의 받침대로서 '반원 형태를 가지는 두꺼운 판'이 도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비록 받침대의 재질이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동종 업계의 종사자라면 그것이 강철 재질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6항 기술정보가 이 사건 공사 전에 동종 업계에서 이미 널리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설계도면(갑 제12호증)이 작성되기 전인 2012. 5. 8.경 트러스 하부 파이프 찌그러짐 방지에 관한 도면(갑 제23호증)을 자신이 직접 손으로 그린 뒤, 그 도면을 피고 현대자동차에게 팩스로 보냈는데, 피고 현대자동차가 그 도면을 피고 다올이앤씨에게 전달하여 피고 다올이앤씨가 위 트러스 파이프 받침대를 사용

하게 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갑 제23호증은 트러스 하부 파이프 찌그러짐 방지 관련 내용이 도시된 도면일 뿐으로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도면을 피고 현대자동차에게 송부한 것인지(피고 현대자동차는 그 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 송부 일자가 2012. 5. 8.경인지, 피고 현대자동차가 피고 다올이앤씨에게 위 도면을 전달하였는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갑 제23호증의 도면이 2012. 5. 8.경 피고 현대자동차에게 송부되었고 그 도면이 다시 피고 다올이앤씨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12호증의 설계도면이 원고 주장과 같이 갑 제23호증의 도면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제6항 기술정보는 이 사건 공사 전에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 사건 제6항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6항 기술정보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공사 조건 관련 기술정보(이 사건 제7 내지 9항 기술정보)

이 사건 제7항 기술정보는 '날씨 등의 공사시 전제조건'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제8항 기술정보는 '공사비'에 관한 것이며, 이 사건 제9항 기술정보는 시공사 양서로서 '원고와 피고 현대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 사이의 역할 분담'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7 내지 9항 기술정보에 나타난 위와 같은 정보들은 기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동종 업계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관행, 상식 내지 행정사항들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전부터 영업비밀로 관리해 온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제7 내지 9항 기술정보도 2010. 4. 29.자 피고 현대자동차의 회의록(갑 제6호증)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위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7 내지 9항 기술정보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3) 소결론

따라서 [별지] 기재 원고 기술(이 사건 제1 내지 9항 기술정보)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부정경쟁행위(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우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차)목의 규정은 부정경쟁방지법이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서 그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그 시행일 전인 2012. 8. 31. 완료되었으므로 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부정경쟁행위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나아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

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6항 기술정보는 이 사건 공사 전에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거나 동종 업계의 기술자들에 의하여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7 내지 9항 기술정보는 공사현장에서 관행적으로 고려되는 공사 전제조건, 공사비, 시공사양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9항 기술정보와 같은 [별지] 기재 원고 기술을 두고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이라고 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공공의 영역에 있는 기술을 사용한 것을 두고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기재 원고 기술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수성에 맞추어 개량된 것들로서 원고와 피고 현대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 사이에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협의과정에서의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이 사건 공사 전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성과물이라거나 원고만의 독단적인 성과물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제정

                 판사      나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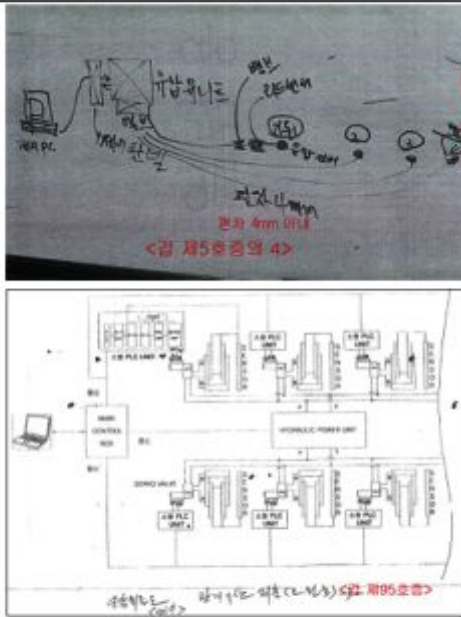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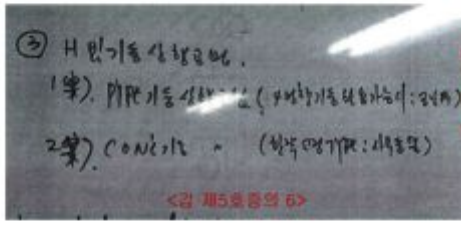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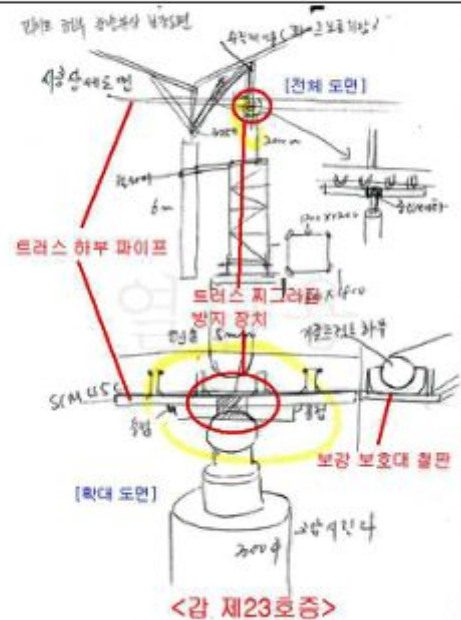
                 판사      이지영

[별지]

## 원고 기술

분류	원고 기술의 내용	관련 도면 및 설명 자료
1	<p>「파이프 기둥」의 상승을 위한 유압 실린더의 설치 위치에 관한 것으로서, 바닥에 유압 실린더를 설치하여 기둥의 하단부에 고정(나사볼트 설치로 지지)시키는 것,</p> <p>증고 높이가 1,600mm인 점을 감안하여 실린더 상승 높이를 1,800mm로 설정하여 한 번에 증고함으로써 공사 기간과 비용 절감을 꾀한 것,</p> <p>증고 시 실린더의 흔들림 방지를 위해 위쪽에 3각 형태의 지지 턴버클을 설치하는 것에 관한 내용</p>	
2	<p>「콘크리트 기둥(하단은 콘크리트, 상단은 파이프 또는 H빔으로 구성) 중 한 쪽 트러스만 기둥 위에 얹어져 있는 구조」의 지붕 상승을 위한 유압 실린더의 설치 위치에 관한 것으로서, 하단부의 콘크리트를 절단하지 않고(특히 사무동 벽체의 콘크리트 지붕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상단부의 파이프 또는 H빔과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서,</p> <p>유압 실린더를 상단부의 파이프 또는 H빔에 고정하기 위하여 가로세로 각 1.2m에 높이 약 5m의 철탑 받침을 만들고 그 위에 유압 실린더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p>	
3	<p>「콘크리트 기둥(하단은 콘크리트, 상단은 파이프 또는 H빔으로 구성) 중 양 쪽 트러스가 기둥 위에 얹어져 있는 구조」의 지붕 상승을 위한 유압 실린더의 설치 위치에 관한 것으로서, 트러스 찌그러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둥의 양쪽에 유압 실린더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p>	



<p>4</p>	<p>이 사건 현장이 A, B 두 군데의 동떨어진 구역을 동시에 공사해야 하는 점, 3가지 종류의 기둥이 섞여 있는 점, 사무동 벽체의 분리나 훼손을 방지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컴퓨터 제어를 통한 안전한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각 기둥의 상승 높이를 편차 4mm 이내에서 상승되도록 각 유압 실린더들을 시스템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제어하는 시스템에 관한 내용</p>	
<p>5</p>	<p>이 사건 현장에 올리고자 하는 기둥이 철재(H빔) 기둥, 파이프 기둥, 콘크리트 기둥의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 경우에 따라 공법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 내용으로서, 특히 철재(H빔) 기둥의 경우 사방 기둥을 모두 유압 실린더 설치가 가능한 경우(공장 내 기둥)와 한쪽 방향만 가능한 경우(사무동 옆 기둥) 각각 어떤 공법을 사용할지에 관한 내용</p>	
<p>6</p>	<p>실린더 상부가 트러스 하부 파이프를 받치는 과정에서 트러스 하부 파이프 (두께 6mm)에 찌그러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트러스 하부 파이프 아래에 길쭉한 반원 형태의 철판을 덧대어 하중을 받는 부분을 넓게 하고, 그 아래에 다시 직사각형 형태의 철판(보강 보호대 철판, SCM 45C 재질)을 대며, 반원 형태의 철판이 보강 보호대 철판의 중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하고, 보강 보호대 철판은 약간의 휨을 미리 만들어 하중이 한 부분에만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을 담고 있는 트러스 찌그러짐 방지를 위한 장치에 관한 내용</p>	

7	<p>이 사건 공사 시기(7월 말에서 8월 초)와 공사 기간을 고려한 공사 시의 전제조건으로서,          각 기둥 반경 5m 내에는 상하부 모두 간섭물을 치워야 한다는 점, 풍속이 초속 5m 이상일 경우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 공사진행 중 증고된 지붕과 증고되지 않은 지붕 사이의 빈 공간으로 빗물이 유입될 경우 대책(방수천으로 1.6m 이상의 스킵트를 피스 등으로 고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내용</p>	<p>* 공사시 전제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둥기준 5m 내 간섭물 없애기 (기둥내)</li> <li>2. 각 기둥과 리와라에 동행 (적게 나면 리와라)</li> <li>3. 유입방지막 설치 (타일식 건물은 안됨) (18)</li> <li>4. 풍속 5m/sec 이상이 3)항이 적용되었을 때</li> <li>5. 무조건인한 공작에 빗물이 유입되면 HMC 대책</li> </ol> <p>* 공사비 적용 <u>제5호증의 11</u></p>
8	<p>공사 방법에 따른 공사비의 견적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A, B 지역을 동시에 공사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만 증고 공사하는 경우 등 기존 공법과 비교한 공사의 난이도 상승 비율에 관한 내용</p>	<p>* 공사비 견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 지역 등 다시. 증고공사비율이 10%</li> <li>2. 증고부분과 연결부 (기둥내) 방수막 20%</li> <li>3. 증고부분은 건물공사비 100%에 25%</li> </ol> <p>&lt;갑 제5호증의 11&gt;</p>
9	<p>이 사건 공사에서 원고와 피고1, 2 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것으로서,          공사 시공(구조 검토, 설계, 시공, 안전)과 우수 대책을 맡는 내용으로 사업에서 원고가 담당하는 역할과 시행 기술을 알 수 있는 내용</p>	<p>* 시공 사항서 (HMC)</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 2층 50cm/100cm 공사시공 (9월말, 10월, 11월, 12월) (피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li> <li>2. 기둥내 부속공사로 인해 HMC</li> <li>3. 기둥내 안전부속공사로 인해 HMC &lt;갑 제5호증의 21&gt;</li> <li>4. 기둥내 안전 2.5m (2.5m) 안전막 (수위면) 제거 HMC</li> <li>5. 우수흐름 주 변부분 우수저류수면: 시공완료</li> <li>6. 현관상부작업시 안전막 제거: HMC</li> <li>7. 기둥내 안전부속공사로 인해 안전막 제거: HMC (양면작업)</li> <li>8. 기둥내 안전부속공사로 인해 안전막: HMC</li> <li>9. 기둥내 안전막 제거 (유수면) 시공 2.5m 안전막: HMC (2.5)</li> </ol>